

부산지방법원 2022. 10. 27 선고 2021가단348690 판결 [약정금및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2. 8. 18.

판결 선고2022. 10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,639,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16.부터 2022. 10. 2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8,837,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8. 31.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,000,000원을 이자 연 24%, 변제일 2019. 4. 27.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(갑 제1호증, 이하 '이 사건 차용증'이라 한다)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.

나. 피고와 C은 2018. 9. 3.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8. 31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,000,000원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피고,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D, E(병합) 부동산임의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 한다)에서 2019. 10. 30.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, 위 나.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.

라. 위 경매법원은 2019. 11. 29.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96,117,089원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F조합에 387,915,794원, 각 근저당권자 피고, C(이 사건 부동산 관련)에게 각 173,600,000원(원금 140,000,000원, 이자 33,600,000원), 2순위로 근저당권자 G에게 117,903,172원, 근저당권자 H에게 1,356,608원,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I에게 41,741,51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(이하 '이 사건 배당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마. 피고는 2019. 12. 4.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173,600,000원을 수령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로부터 140,000,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,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은 68,356,640원에 불과하다.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여 원금이 140,000,000원이라고 채권신고하여 이자 33,600,000원이 포함된 173,600,000원을 배당받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배당받은 84,758,781원(=173,600,000원-차용금 68,356,640원-배당일까지 발생한 이자 20,484,579원)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

대주가 차주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대여금을 인도한 사실 역시 입증하여야 한다.

갑 제1, 3호증 및 을 제1, 2, 3, 4, 8, 9, 10, 13,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.

○ 피고는 원고에게 2018. 9. 4. 875,400원, 5,044,320원을, 2018. 9. 5. 40,000,000원 총 45,919,720원을 원고 금융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.

○ 이 사건 차용증에는 "위 금액을 수표 별지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차액 모두는 차후 문자로 전송하고 전송한 계좌로 송금함으로 영수를 갈음함. 법무비용: 공증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."라는 문구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.

○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8. 8. 31. 발행된 자기앞수표 복사본을 제출하였는데, 원고는 수표 3매(금액 총 45,000,000원)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는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.

○ 원고는 보존등기비용 22,436,880원을 대여금 지급에 갈음하여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, 위와 같이 관련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,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보존등기비용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28,204,880원,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875,400원 합계 29,080,280원(=28,204,880원+875,400원)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결국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① 원고 금융계좌로 직접 지급한 45,919,720원, ② 각종 등기비용, 공정증서 작성 비용 29,080,280원, ③ 수표로 지급한 45,000,000원 합계 120,000,000원이다.

나.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 C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선이자 명목으로 8,400,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, 을 제15,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2) 피고는 3개월분의 선이자 명목으로 7,475,360원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아래에서 보는 바와

같이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인 120,000,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율이 24%를 초과하므로,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선이자 공제약정은 무효이다.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1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 2018. 8. 31.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인 2019. 11. 29.까지 연 24%로 계산한 이자, 지연손해금 35,960,655원 합계 155,960,65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73,600,000원에서 위 155,960,655원을 제외한 금액 17,639,345원을 부당이득하였다.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,639,3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. 11. 16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10. 2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우경아

별지